

현안과제연구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회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수행 : 이민정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회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수행 : 이민정

## 목 차

### I. 기본개요

-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지법) 개요
-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괄

### II. 화력발전소입지시군

- 1) 지역 및 발전소 개괄
- 2) 감사 및 기타 지적사항
- 3) 특별회계 분석

### III.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제안

- 1) 문제점 도출
- 2) 개선안 제안

### IV. 사례비교

- 1) 국내사례
- 2) 해외사례

### V. 요약 및 결론

# I. 기본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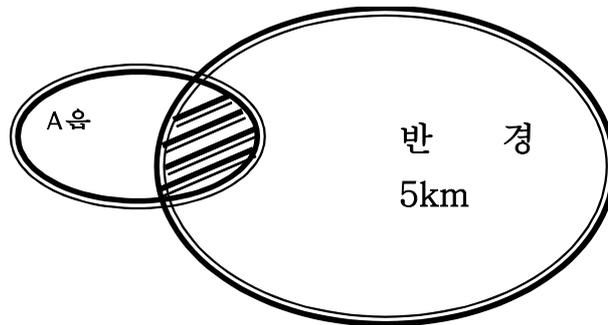
## 1)발전소주변지역자원에 관한 법률(발주지법) 개요

### □ 목적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 용어정의

- 주변지역: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중 혹은 건설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1만kW 초과)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읍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



※ 발전소 주변 5km에 위치한 A읍의 경우 지원되는 금액은  부분이지만 지원금 사용은 A읍 전체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함.

### □ 발주지법에 의한 재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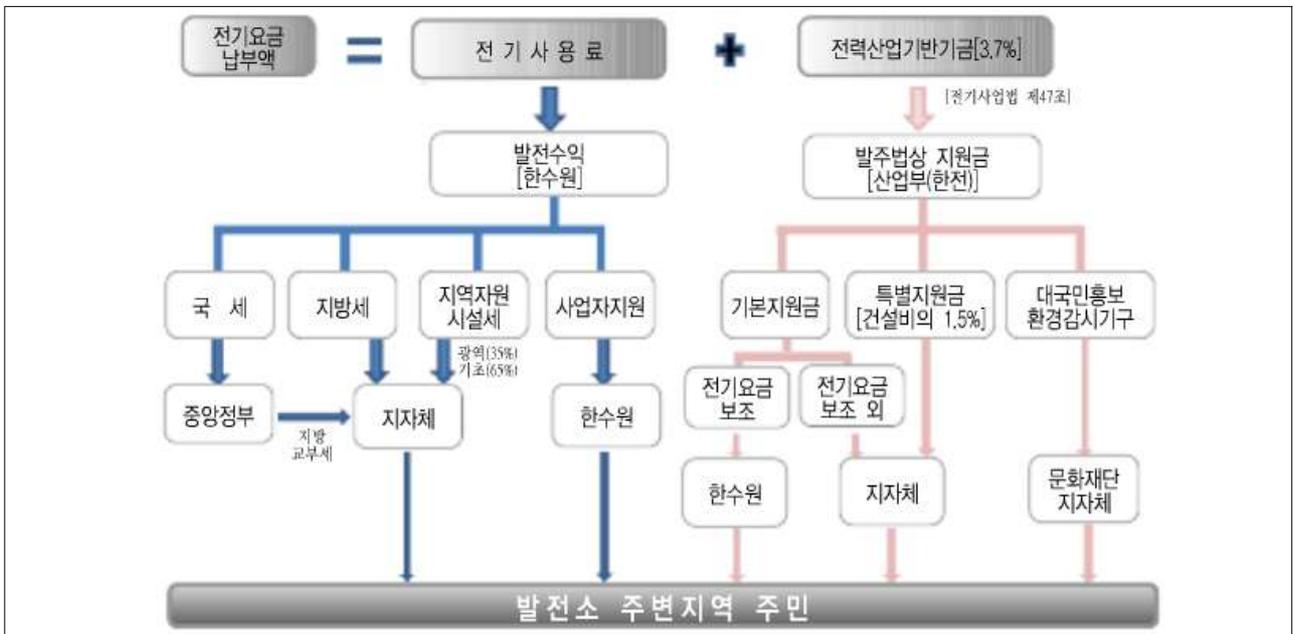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에 의해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
  - ①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 이용하여 전기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사업

② 발주지법: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된 중요사업

- 지역자원시설세
- (원자력, 수력발전) 사업자지원사업비

<그림 1> 지원금 및 지방세 흐름도



출처) 원자력백서 2013

□ 지원내역

- 2011년~2013년의 3년간 각 화력발전소의 지원금을 살펴보면, 당진화력 약 356억원, 태안화력 약 217억원,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 약 227억원, 서천화력 약 23억원을 지원했음.
- 즉, 매년 각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당진시 약 120억원, 태안군 약 72억원, 보령시 약 76억원, 서천군 약 7억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 2011~2013년 화력발전소별 지원금

발전원	주관기관	발전소명	용량 (MW)	지원단가 (원/kwh)	년도	지원금액 (백만원)	비고
유연탄	(주)한국 남동발전	당진화력	4,000	0.15	2011	10,316	#1~8(가동중)
			2,000	0.15	2012	14,657	#9~10(건설중) (’11. 6 ~ ’16. 6)
					2013	10,701	
	소 계					35,674	
유연탄	(주)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	4,000	0.15	2011	4,732	#1~8 (가동중)
			2,100	0.15	2012	4,663	#9~10 (건설중) (’12. 5 ~ ’16.12)
					2013	12,307	
	소 계					21,702	
유연탄	(주)한국 중부발전	보령화력	5,350	0.15	2011	4,940	보령#1~8,(유연탄) 보령복합#1~3(LNG)
					2012	5,595	
					2013	5,708	
		신보령화력	2,000	0.15	2013	6,483	
	소 계					22,726	
무연탄	(주)한국 중부발전	서천화력	400	0.3	2011	716	
					2012	777	
					2013	820	
	소 계					2,313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및 산업통상자원부(2013)

## 2)발전소주변지역자원 지원사업 개괄

### □ 지원사업 내용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이 있음.(표 2 참조)
- 기본지원사업의 세부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기타사업이 있음.(표 3 참조)
-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축, 증축 시 지원됨.
- 기타지원사업 중,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지원사업 관리·연구·평가 및 홍보사업 및 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

원사업이 있음.

<표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종류

사업종류		대상	시행주체 <sup>주1)</sup>	법령근거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변지역'	지자체장	발주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발전사업자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 관할지역	지자체장	발주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
원자력 대국민 홍보사업		일반국민	법인 (원자력문화 재단)	발주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
기타지원사업	지원사업 관리·연구· 평가 및 홍보사업	발전소 소재지역 <sup>주2)</sup>	지자체장	발주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
	원전주변 환경 및 방 사선 안전 감시기구 설치·운영 지원사업			
	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기타사업		발전사업자	

자료) 최성두(2009) ' ' 를 수정, 가필.

주1) 지자체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음.

주2) 기장군(고리), 울주군(신고리), 경주시(월성), 울진군(한울), 영광군(한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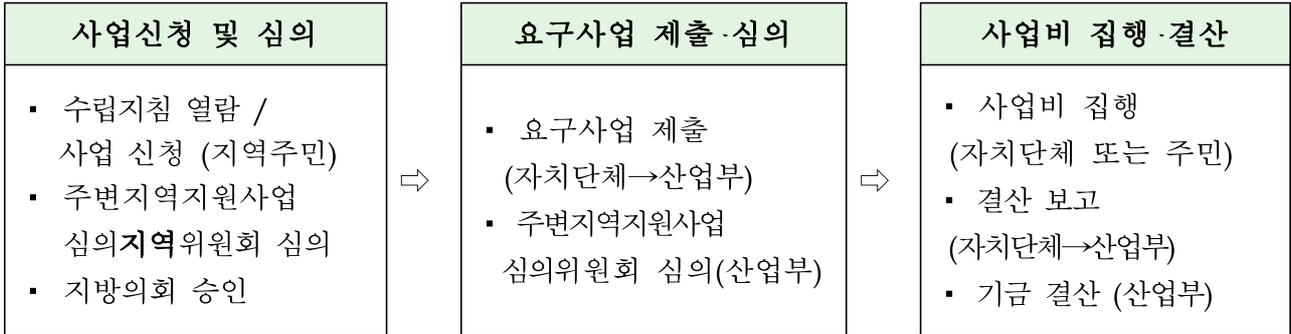
<표 3> 기본지원사업의 내용

사업종류	세부내용	조건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 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 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사업 -사업시행자는 운영규칙 마련
공공·사회복지사업	<공공시설>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공공시설> -사업시행 이후 지자체가 소유가능한 사업 위주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가능한 사업 지양  <사회복지> -지자체장은 운영규칙 마련 가능 -건립시설은 지자체 소유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용자사업	<용자사업> - 해당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실시 -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용자금 대여약정 체결·운영 가능 - 조례로 기준 정함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기업의 유치·설립·운영에 필요한 용자사업·임대사업·보조사업 - 조례로 기준 정함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통학·숙식지원, 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관련 시설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5~30% 범위 내에서 결정 (지원금 연간총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결정가능) - 우선지원가능 대상: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주자 자녀, 학교장 추천의 결식아동·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대상자 자녀 - 동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은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적립가능
전기요금보조사업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 체결된 주택용 전력(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 고객과 1주택 수가구 고객 포함) 및 산업용 전력고객	-시행대상: 원전 또는 연간 총기본지원사업비의 20억원 이상인 발전소 -지원한도: 기본지원사업비의 20%이내 - 주택용 전력의 호당, 산업용 전력 수급계약단위별 지원한도는 별도로 정함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협조제고에 필요한 사업	-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홍보(지역이미지제고)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3)

□ 절차

-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심의·집행·결산됨. 발전소가 있는 관할지 자체는 ‘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표 4 참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고려사항

- 관련법령과 규정, 절차의 준수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확보
- 사업지원대상의 적정성 확보
- 주민의견 수렴, 사업계획 공개 등 절차 마련, 이행 :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및 ‘심의지역위원회’ 설치
- 시설물의 관리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실시
-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할 우선순위 사업

**< 사업선정시 우선순위 >**

- ① 전원설비 건설입지 확보와 연계된 사업
- ②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이주자 및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 ③ 소득증대 및 고용증진효과 기대사업
- ④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성 숙원사업
- ⑤ 인재육성사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3)

<표 4> 심의위원회 및 심의지역위원회

단체명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설치조건	-	발전소가 있는 지역 관할지자체의 장은 '심의지역위원회'를 발전소별로 설치가능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지자체
역할	기금지원사업 계획수립/결산	기금지원사업 심의
위원수	13명 이내	14명 이내
구성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위원	· 중앙정부 국장급 5명 · 발전사업자 임원 3명 · 교수, 비영리단체 대표 4명
		부자치단체장 · 시(군)의원 4명 · 시(군) 공무원 1명 · 발전소 직원 1명 · 위원장 위촉 3명 · 자치단체장 위촉 4명
임기	2년 (연임가능)	좌동
회의소집	위원장이 소집	좌동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좌동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좌동
사무간사	1명(산업통상자원부 소속공무원)	1명(해당발전소 직원)
수당 및 운영경비	회의출석위원에게 수당지급	좌동

자료) 발주지법 시행령 제3조~제12조

## II. 화력발전소 입지시군

### 1) 지역 및 발전소 개괄

#### (1) 당진시

##### ○ 준공

- 1호기 (1999. 6) 2호기(1999. 12) 3호기(2000. 9) 4호기(2001. 3)  
5호기(2005.10) 6호기(2006. 4) 7호기(2007.6) 8호기(2007. 12)  
( 9, 10호기 건설중 )

- 소수력 (5MW), 태양광 (3.9MW) 준공

##### ○ ‘주변지역’ : 석문면 19개 리

- 거리기준으로 기금배분 (ex. 교로3리 19.2%)



출처) 구글이미지

##### ○ 관련조례(2012년 제정)

조례명	주요내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①소득증대사업 및 ②공공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①은 관련어촌계/ 부락단위 공동명의, ②는 시장명의 취득이 원칙 -지원사업시설물 관리위해 기금조성 의무 (재원: 지원사업 및 시설물의 일정수익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	-용자금운영 기준

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대상: ①주민복지지원사업, ②기업유치지원사업 용자한도: ①500만원/명, ②2천만원/기업 (둘다 연3%, 2년거치 3년분할상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목적, 세입세출 내용, 준용규정

(2) 보령시

○ 준공

- 보령: 1~2호기(1984. 9) 3~6호기(1994. 4) 7~8호기(2008.12)

- 신보령 1, 2호기 건설중 (2011.12 착공, 2017년 준공예정)

○ ‘주변지역’ : 오포면( ), 천북면( ), 주교면( ), 주포면 (8개 리)



출처) 구글 이미지

○ 관련조례

조례명	주요내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1995년 제정)	-①기본지원사업, ②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①중 소득증대사업과 ②로 조성된 시설은 관련어촌계 또는 부락단위 공동명의 ①중 공공시설사업은 시장명의 취득 (단 마을회관, 노인회관, 목욕탕은 부락단위 공동명의) -어촌계 또는 부락단위 주민은 지원사업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기금조성 의무 (재원: 지원사업 및 시설물의 일정수익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 례 (1996년 제정)	-용자금운영 기준 대상: ①주민복지지원사업, ②기업유치지원사업 용자한도: ① 1천만원/명, ②2천만원~3억원(종업원별)/기업 (둘다 연2%,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 별회계 설치조례 (1995년 제정)	-목적, 세입세출 내용, 준용규정

(3) 태안군

○ 준공

- 1호기(1995.6) 2호기(1995.12) 3호기(1997.3) 4호기(1997.8)
- 5호기(2001.10) 6호기(2002.5) 7호기(2007.2) 8호기(2007.8)
- 9, 10호기 건설중(2016년 완공예정)

○ ‘주변지역’ 구성 : 40개 리(원북면 24리, 이원면 16리)

- 원북면 65%, 이원면 35% 배분



출처) 구글 이미지

○ 관련조례

조례명	주요내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 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2010년 제정)	-①소득증대사업 및 ②공공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설치는 군수 시행이 원칙. 단, 사업성격상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마을회 등이 보조사 업으로 시행가능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마을회는 지원사업시설물 관리위해

	기금조성 의무 (재원: 지원사업 및 시설물의 수익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 례 (1996년 제정)	-용자금운영 기준 대상: ①주민복지지원사업, ②기업유치지원사업 용자한도: ① 3천만원/명, ②1억원/기업 (둘다 연1%,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 별회계 설치조례 (1990년 제정)	-목적, 세입세출 내용, 준용규정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숙박시 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조례 (1994년 제정, 2014년 폐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숙박시설(반계리 소재)을 20년간 무 상임대하기 위한 장치

(4) 서천군

○ 준공

- 1,2호기(1983.11)
- 신서천화력발전 계획(2015년 착공, 2019년 준공목표)

○ ‘주변지역’ : 서면 24개 리



출처) 구글이미지

○ 관련조례

조례명	주요내용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1990년 제정)	-①소득증대시설, ②공공시설물로 취득한 재산 -①은 관련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 ②는 군수명의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지원사업시설물 관리를 위해 기금조성 의무 (재원: 시설물 사용 수입금의 10%이상 적립의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농·축·어업자금 융자관리 조례 (2001년 제정)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영농자금, 영어자금, 축산자금, 영립자금. -융자한도: 500만원/인(연3%, 2년거치 3년분할상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1990년 제정)	-목적, 세입세출 내용, 준용규정

## 2) 감사 및 기타 지적사항

### ①종합감사결과

#### ○ 당진시(2013년 종합감사결과)

- 기본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이 아님에도 △△리 마을회에 민간자본보조 교부 결정, 토지구입비 집행.
- 기본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으로 민박사업 건립부지 구입에 민간자본 보조, 구입한 토지가 보조목적 용도 외로 사용.
- 지원사업과 연관없는 사무관리비 집행(복사용지, 프린터기, 선풍기 구입)

#### ○ 보령시(2012년 종합감사결과)

- △△면 △△영농법인에 지원한 민간자본보조 사업 부적정 (임의매각 및 개인 명의 등기)
- △△발전협의회에 운영차량구입을 협의회장 소유로 등록
- 지원사업과 연관없는 사무관리비 집행.(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사무기기 구입)

#### ○ 태안군(2013년 종합감사결과)

- 기본지원사업 대상목적외 사업선정(자율방법대 보수공사,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 예비군중대본부 전기케이블 교체공사)
- 소득증대사업으로 취득한 공용물 개인명의 등재
- 소득증대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 개인명의 근저당 설정
- 소득증대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운영문제(펜션 미운영, 유실수 식재의 소득 발생 없음)
- 한우입식사업 사업종료 후 정산 미실시, 관련기록물 부재
-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사업에 증빙서류가 불충분함에도 준공처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표시판 부재

## ②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미흡
- 주민지원사업 결정과정 불투명
  - 심의지역위원회 운영 형식화
  -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기구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
- 주민지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빈발
  - 사업타당성 검증이 부실하여 중단, 변경
- 사업비 집행과정의 회계투명성 확보장치 미비
- 사업추진 세부과정 외부 비공개
  - 육영사업(장학금지급)에서 수령자전체명단 외부 비공개
  -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외부 비공개

### 3) 특별회계 분석

○ 당진시

<표 5> 당진시 2011년 지원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종류	단위사업명	세부내역	금액	비고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수산종묘 방류 농자재구입	200 300		
	상공업시설	특산물판매장 관련	323		
	관광산업시설	민박관련	2,118		
	소계 (b)		2,942	64.6%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비		-		
	도로시설비		-		
	항만시설비		-		
	상·하수도시설비	상수도사업	148		
	환경·위생시설비		-		
	운동·오락시설비	마을회관 체육시설	30		
	전기·통신시설비		-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마을창고 건립	20		
	사회복지사업비		-		
소계 (c)		198	4.4%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비		-		
소계 (d)		0	-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		
	산업용		-		
	소계 (e)		0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200		
	학자금·장학금지원비		370		
	장학기금적립비		250		
	학교체육활동지원비		74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47		
	학교급식시설지원비		-		
	우수학생표창		5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166		
	육영사업기타	행사지원		210	
		선진지견학 예비비		10 62	
소계 (f)		1,394	30.6%		
기타사업	인건비		-		
	감시위원회		-		
	운영 및 재료비		-		
	홍보비		-		
	교육훈련비	노인대학운영	16	공공·사회복지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유지비		-		
	업무용 차량 유지비		-		
	일반수용비		-		
	국내여비		-		
	기기구입 적립비		-		
	소계 (g)		16	0.4%	
기본지원사업 합계(a)			4,550	9,914	
특별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	시립박물관 건립	5,364		

<표 6> 당진시 2012년 지원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종류	세부내역	사업명	금액	비고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농지구입	1,467	
		농자재지원	250	
		수산종묘 방류사업	350	
	상공업시설	직판장 관련	705	
관광산업시설	특산물판매장 관련	223		
	민박사업 관련	1,463		
	소계		4,458	62.8%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비		-	
	도로시설비	농로포장, 하천정비	43	
	항만시설비		-	
	상·하수도시설비		-	
	환경·위생시설비		-	
	운동·오락시설비	체육시설	167	
	전기·통신시설비		-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노인복지회관 건립	198	
	사회복지사업비		-	
		소계		408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비	-		
	소계		0	-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	
	산업용		-	
	소계		0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400	
	학자금·장학금지원비		400	
	장학기금적립비		300	
	학교체육활동지원비		253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60	
	학교급식시설지원비		-	
	우수학생표창		5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	
	육영사업기타	행사지원	794	
		소계		2,212
기타사업	인건비		-	
	감시위원회		-	
	운영 및 재료비		-	
	홍보비		-	
	교육훈련비	노인대학 운영	17	공공·사회복지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유지비		-	
	업무용 차량 유지비		-	
	일반수용비	마을회관 집기구입	1	공공·사회복지
	국내여비		-	
	기구구입 적립비		-	
	소계		18	0.3%
기본지원사업 합계			7,096	13,988
특별지원 사업	공공시설사업	당진시립박물관 건립	462	
	사회복지사업	석문스포츠센터 건립 창의사 부지구입	3,000 230	
	소득증대사업	어시장특화사업	3,200	

<표 7> 당진시 2013년 지원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종류	세부내역	사업명	금액	비고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농지구입 농자재 지원 수산업 조성사업	3,434 300 350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	민박사업 관련	306	
	소계		4,390	63.3%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비		-	
	도로시설비		-	
	항만시설비		-	
	상·하수도시설비		-	
	환경·위생시설비		-	
	운동·오락시설비		-	
	전기·통신시설비		-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경로당 부지구입, 신축 마을광장 부지구입	264 100	
	사회복지사업비		-	
소계		364	5.3%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비		-	
소계		0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	
	산업용		-	
	소계		0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677	
	학자금·장학금지원비		400	
	장학기금적립비		100	
	학교체육활동지원비		257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50	
	학교급식시설지원비		-	
	우수학생표창		7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	
	육영사업기타	행사지원	669	
	소계		2,160	31.2%
기타사업	인건비		-	
	감시위원회		-	
	운영 및 재료비		-	
	홍보비		-	
	교육훈련비	노인대학 운영	17	공공·사회복지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유지비		-	
	업무용 차량 유지비		-	
	일반수용비		-	
	국내여비		-	
	기기구입 적립비		-	
소계		17	0.2%	
기본지원사업 합계			6,931	
특별지원 사업	공공시설사업	석문 스포츠센터 건립	1,500	10,431
	사회복지사업	시립박물관 건립	2,000	

○ 보령시

<표 8> 보령시 2011년 지원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종류	세부내역	사업명	금액	비고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농기계 수산종묘 방류 등	1,147 201	
	상공업시설		-	
	관광산업시설		-	
	소계		1,348	27.3%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비		-	
	도로시설비	농로, 배수로, 도로	696	
	항만시설비		-	
	상·하수도시설비	상수도사업	121	
	환경·위생시설비	방역 등	67	
	운동·오락시설비	운동기기	29	
	전기·통신시설비	방송시설	30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다목적건물 매입 부지매입	70 30	소득증대
	사회복지사업비		-	
소계		1,043	21.1%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비		-	
소계		0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992	
	산업용			
	소계		992	20.1%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200	
	학자금·장학금지원비		360	
	장학기금적립비		150	
	학교체육활동지원비		60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학교급식시설지원비		-	
	우수학생표창		-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교육프로그램	170	
	육영사업기타		-	
소계		940	19.0%	
기타사업	인건비		-	
	감시위원회		-	
	운영 및 재료비	수산업경영인회 자율방법대 등	10 73	소득증대
	홍보비		-	
	교육훈련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유지비	마을회관 등 보수	106	
	업무용 차량 유지비	어린이집차량 및 마을버스	29	
	일반수용비	물품	172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	87	
	기기구입		90	
	행사지원		48	
소계		615	12.5%	
기본지원사업 합계			4,938	

<표 9> 보령시 2012년 지원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종류	세부내역	사업명	금액	비고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농기계 등 구입	1,210	공공·사회복지 공공·사회복지
		수산종묘 방류 등	130	
		가공공장설비, 농자재	32	
		수산종묘 방류, 기기 등	76	
	상공업시설		-	
	관광산업시설		-	
	소계		1,448	25.9%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비		-	
	도로시설비	농로, 배수로, 도로	805	
	항만시설비	여객선대기소 설치	60	
	상·하수도시설비	상수도사업	61	
	환경·위생시설비	하계방역, 화장실관리	27	
	운동·오락시설비	운동기구 구입	112	
	전기·통신시설비	가로등	27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마을회관 증축	20	
	사회복지사업비		-	
	소계		1,107	19.8%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비		-	
	소계		0	-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1,123	
	산업용			
		소계		1,123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160	
	학자금·장학금지원비		360	
	장학기금적립비		200	
	학교체육활동지원비		70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학교급식시설지원비		-	
	우수학생표창		-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	
	육영사업기타		290	
	소계		1,080	19.3%
기타사업	인건비	등산로,관광지 인부임	25	공공·사회복지
	감시위원회		-	
	운영 및 재료비	운영비	113	공공·사회복지
	홍보비	마을표석, 홍보조형물	34	공공·사회복지
	교육훈련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유지비	보수공사, 시설미화	21	공공·사회복지
	업무용 차량 유지비	마을버스 등	40	공공·사회복지
	일반수용비	물품구입	252	공공·사회복지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	90	공공·사회복지
	기기구입	기기, 설비	19	공공·사회복지
	행사지원		62	공공·사회복지
	토지매입		181	공공·사회복지
	소계		837	15.0%
기본지원사업 합계			5,595	

<표 10> 보령시 2013년 지원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종류	세부내역	사업명	금액	비고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농기계구입	1228	
		수산물종묘 방류	179	
		토지매입	32	
	상공업시설		-	
관광산업시설		-		
	소계		1,439	25.2%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비	건강검진	213	
	도로시설비	도로, 농로	392	
		토지매입	73	
	항만시설비	선박거치대	40	
	상·하수도시설비	상수도, 배수로	493	
	환경·위생시설비	쓰레기수거차량 구입	19	공공)도로시설
		하계방역 등	66	
	운동·오락시설비	건강교실, 운동기구	44	공공)도로시설
		운동기구	10	
	전기·통신시설비	난방비 지원	48	공공)도로시설
태양광, 방송시설		132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		
사회복지사업비	행사지원, 청년회 운영	235		
	소계		1,765	30.9%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비		-	
	소계		0	-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910	
	산업용			
		소계		910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105	
	학자금·장학금지원비		731	
	장학기금적립비		-	
	학교체육활동지원비		56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학교급식시설지원비		-	
	우수학생표창		-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	
	육영사업기타		55	
	소계		947	16.6%
기타사업	인건비		-	
	감시위원회		-	
	운영 및 재료비	어린이집, 마을회관 운영	8	
	홍보비		-	
	교육훈련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유지비	마을회관 보수	30	공공)도로시설
	업무용 차량 유지비	방법, 소방대 차량구입	112	공공)도로시설
	일반수용비		10	공공)도로시설
			310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	39	공공)운동오락
	기기구입		123	공공)도로시설
	행사지원		15	공공)도로시설
토지매입		-		
	소계		647	11.3%
기본지원사업 합계			5,708	

<표 11> 신보령 2013년 지원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종류	세부내역	사업명	금액	비고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농기계구입 바지락종패	325 26	공공)도로설비
	상공업시설		-	
	관광산업시설		-	
	소계		351	14.1%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비	건강검진	90	
	도로시설비	도로확장 등	39	
	항만시설비		-	
	상·하수도시설비		-	
	환경·위생시설비	하계방역	36	
	운동·오락시설비	운동기기 구입	10	공공)도로설비
	전기·통신시설비	태양광, 방송시설 가로등, 난방비 지원	179 77	공공)도로설비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마을정비	311	공공)도로설비
	사회복지사업비	행사지원	25	
소계		767	30.9%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비		-	
소계		0	-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420	
	산업용			
	소계		420	16.9%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45	
	학자금·장학금지원비		139	
	장학기금적립비		-	
	학교체육활동지원비		24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	
	학교급식시설지원비		-	
	우수학생표창		-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	
	육영사업기타	문화행사 지원	35	
소계		243	9.8%	
기타사업	인건비	등산로 정비	5	공공)도로설비
	감시위원회		-	
	운영 및 재료비		-	
	홍보비		-	
	교육훈련비	강사료	3	공공)도로설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유지비	마을회관, 소방대사무실	92	공공)도로설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마을버스, 차량구입	74	공공)도로설비
	일반수용비	집기구입	250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	102	공공)도로설비
	기기구입	장비임차, 소규모시설 구입	65	공공)도로설비
	행사지원		60	
	토지매입		52	공공)도로설비
소계		703	28.3%	
기본지원사업 합계			2,484	6,484
특별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	대한노인회 지회신축 주민센터 신축	2,000 2,000	

○ 태안군

<표 12> 태안군 2011년 지원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종류	세부내역	사업명	금액	비고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농업관련	510	
		어업관련	150	
		토지매입	52	
	상공업시설		-	
	관광산업시설	점질방, 근린생활시설	100	
	소계		812	17.2%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비		-	
	도로시설비		245	
	항만시설비		-	
	상·하수도시설비	상수도	600	
	환경·위생시설비	신두사구 정화	20	
	운동·오락시설비		-	
	전기·통신시설비		-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650	
	사회복지사업비		-	
		소계		1,515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300	
	기업유치지원사업비		-	
	소계		300	6.3%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381	
	산업용			
	소계		381	8.1%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150	
	학자금·장학금지원비		170	
	장학기금적립비		150	
	학교체육활동지원비	씨클활동지원	85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	
	학교급식시설지원비		-	
	우수학생포상		-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원어민교사	546	
	육영사업기타	기숙사신축, 학습관	325	
	소계		1,426	30.1%
기타사업	인건비		-	
	감시위원회		-	
	운영 및 재료비		200	공공·사회복지
	홍보비		-	
	교육훈련비		-	
	공공요금 및 제세	안전공제보험지원	21	공공·사회복지
	시설유지비		20	공공·사회복지
	업무용 차량 유지비		-	
	일반수용비		-	
	국내여비		-	
	기기구입		57	공공·사회복지
	행사지원		-	
	토지매입		-	
	소계		298	6.3%
기본지원사업 합계			4,732	

<표 13> 태안군 2012년 지원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종류	세부내역	사업명	금액	비고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농업관련 어업관련 토지매입	1,019 40 200	
	상공업시설	마을운영식당 보수	40	
	관광산업시설		-	
	소계		1,299	27.9%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비		-	
	도로시설비		839	
	항만시설비		-	
	상·하수도시설비		240	
	환경·위생시설비	신두리사구 정화	20	
	운동·오락시설비	건강프로그램	52	
	전기·통신시설비	CCTV 설치	20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마을회관 신축, 부지매입	72	
	사회복지사업비		-	
	소계		1,243	26.7%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300	
	기업유치지원사업비		-	
소계		300	6.4%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372	
	산업용			
	소계		372	8.0%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126	
	학자금·장학금지원비		160	
	장학기금적립비		200	
	학교체육활동지원비		125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	
	학교급식시설지원비		-	
	우수학생표창		-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원어민교사	647	
	육영사업기타	기숙형학교지정 운영비	30	
	소계		1,288	27.6%
기타사업	인건비		-	
	감시위원회		-	
	운영 및 재료비		-	
	홍보비		-	
	교육훈련비		-	
	공공요금 및 제세	안전공제보험지원	23	공공·사회복지
	시설유지비		20	공공·사회복지
	업무용 차량 유지비		-	
	일반수용비	물품구입	1	소득증대
	국내여비		-	
	기기구입		16	공공·사회복지
	행사지원		-	
	재해피해복구		100	공공·사회복지
	소계		160	3.4%
기본지원사업 합계			4,662	

<표 14> 태안군 2013년 지원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종류	세부내역	사업명	금액	비고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농업관련	1,004	
		어업관련	105	
		토지매입	768	
	상공업시설	직판장 신축	126	농림수산업
	관광산업시설	마을민박,식당	120	
	소계		2,123	29.1%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비		-	
	도로시설비		1,531	*환경·위생
	항만시설비		-	
	상·하수도시설비		373	+환경·위생 소득)농림수산
	환경·위생시설비	신두리사구 정화	20	
	운동·오락시설비	게이트볼장 건강프로그램	50 56	사회복지
	전기·통신시설비	태양광발전시설	62	소득)농림수산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마을회관, 다목적시설	199	소득)농림수산
	사회복지사업비	저소득층 생필품 소외계층 집수리	5 20	환경·위생시설
		소계		2,376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500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비		-	
	소계		500	6.8%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473	
	산업용		-	
	소계		473	6.5%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209	
	학자금·장학금지원비		160	
	장학기금적립비		200	
	학교체육활동지원비		40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210	
	학교급식시설지원비		-	
	우수학생표창		-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원어민교사	850	
	육영사업기타	기숙형학교지정 운영비	50	
		소계		1,719
기타사업	인건비		-	
	감시위원회		-	
	운영 및 재료비		-	
	홍보비		-	
	교육훈련비		-	
	공공요금 및 제세	안전공제보험	22	공공)사회복지
	시설유지비	방범대 리모델링	20	공공)환경·위생
	업무용 차량 유지비	주민생활편익시설	26	소득)농림수산
	일반수용비	산불진화차량 구입	40	
	국내여비		8	
	기기구입		-	
	행사지원		-	
	재해피해복구		-	
		소계		116
기본지원사업 합계			7,307	
특별지원 사업	공공시설사업	상수도시설	4,400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회관 증축	600	

○ 서천군

<표 15> 서천군 2011년 지원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종류	세부내역	사업명	금액	비고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불가사리 수매 수산종묘 방류	22 30	
	상공업시설		-	
	관광산업시설	축제 지원	8	
	소계		60	8.4%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비		-	
	도로시설비	마을안길 정비 및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288	
	항만시설비		-	
	상·하수도시설비	상수도시설	32	소득증대
	환경·위생시설비		-	
	운동·오락시설비	운동기구 지원	26	
	전기·통신시설비		-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면민의 집 관련	70	
	사회복지사업비		-	
	소계		416	58.1%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작은도서관 운영	3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비		-	
	소계		3	0.4%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	
	산업용		-	
	소계		0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	
	학자금·장학금지원비		30	
	장학기금적립비		-	
	학교체육활동지원비		9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25	
	학교급식시설지원비		64	
	우수학생표창		6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	
	육영사업기타		-	
	소계		134	18.7%
기타사업	인건비		-	
	감시위원회		-	
	운영 및 재료비		-	
	홍보비		-	
	교육훈련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유지비		-	
	업무용 차량 유지비		-	
	일반수용비		-	
	국내여비	선진지견학	3	공공·사회복지
	기기구입 적립비		-	
	기타	김피해어민 자재지원	100	공공·사회복지
	소계		103	14.4%
기본지원사업 합계			716	

<표 16> 서천군 2012년 지원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종류	세부내역	사업명	금액	비고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불가사리 수매 수산종묘 방류	25 27	
	상공업시설		-	
	관광산업시설	축제지원	13	
	소계		65	8.4%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비		-	
	도로시설비	마을안길, 농로포장	388	
	항만시설비		-	
	상·하수도시설비	상수도 지원	5	
	환경·위생시설비		-	
	운동·오락시설비		-	
	전기·통신시설비		-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	
	사회복지사업비		-	
소계		393	50.6%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비		-	
소계		0	-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	
	산업용		-	
	소계		0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	
	학자금·장학금지원비		80	
	장학기금적립비		-	
	학교체육활동지원비		9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25	
	학교급식시설지원비		64	
	우수학생표창		6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	
	육영사업기타		-	
소계		184	23.7%	
기타사업	인건비		-	
	감시위원회		-	
	운영 및 재료비	작은도서관 운영	3	공공·사회복지
	홍보비		-	
	교육훈련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유지비	면민의 집 관련	24	
	업무용 차량 유지비		-	
	일반수용비	마을회관 등 물품	74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	3	소득증대
	기기구입 적립비		-	
	기타	수해지역 장비임차	30	공공·사회복지
소계		134	17.3%	
기본지원사업 합계			776	

<표 17> 서천군 2013년 지원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종류	세부내역	사업명	금액	비고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불가사리 수매 수산종묘 방류	35 30	
	상공업시설		-	
	관광산업시설	축제 지원	16	
	소계		81	9.9%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비		-	
	도로시설비	마을안길 포장 및 농로,배수로 정비 등	346	
	항만시설비		-	
	상·하수도시설비	상수도지원	20	소득증대
	환경·위생시설비	간이화장실 구입	12	
	운동·오락시설비	야외운동기구	24	
	전기·통신시설비		-	
	복지회관건립등시설비	문화공원 조성	25	
	사회복지사업비		-	
소계		427	52.1%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자금융자	작은도서관 운영 면민체육대회	3 22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자금융자		-	
	기업유치지원사업비		-	
	소계		25	3.0%
전기요금보조사업	주택용		-	
	산업용		-	
	소계		0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	
	학자금·장학금지원비		80	
	장학기금적립비		-	
	학교체육활동지원비		9	
	백일장및사생대회개최비		29	
	학교급식시설지원비		-	
	우수학생표창		6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해외문화체험PJ	64	
	육영사업기타		-	
소계		188	22.9%	
기타사업	인건비		-	
	감시위원회		-	
	운영 및 재료비	행사장비	3	
	홍보비		-	
	교육훈련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유지비	면민의 집 시설관리	45	
	업무용 차량 유지비		-	
	일반수용비	마을회관 물품	48	
	국내여비	선진지견학	3	소득증대
	기기구입 적립비		-	
소계		99	12.1%	
기본지원사업 합계			820	

### Ⅲ.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제안

#### 1) 문제점 도출

##### ■ 지출 관련

- 지원사업 선정기준 모호
  - 사업종류별 실행사업의 범위가 포괄적(표3 참조), 실제지원사업과 불일치
  - 선정사업 우선순위(p.6 참조)와 맞지 않는 사업선정
  - 사업종류와 실행사업(세부내역)의 혼재
- 특정분야에 치중된 지원
  - 소득증대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농림수산업시설(‘농기계구입’)
  - 공공·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도로시설비 및 상수도시설 투입이 가장 많음.  
마을회관(면민의 집, 복지회관 등)의 증·개축, 시설 개·보수 분야가 다음.
  - 육영사업은 발전소사업자가 시행하는 관계로 매년 일정수준 유지
  -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분야는 투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  
(주민인터뷰 결과, 주민들의 요구, 방향성 논의 등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이유도 큰 것으로 보임)
-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지출
  - ex. 토지구매, 건물구매

##### ■ 사업내용 관련

-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이 주민지원의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포괄적.
- 주민들이 생각하는 중요안건과 실제집행사업의 괴리
  - 주민들은 건강, 발전소입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보상(토지보상, 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입저하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실제지원사업은 인프라정비, 하드웨어적 시설·기기 분야 지원이 높음.
  -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현재 보령시가 유일(2013년도부터 지원)
- 직접적 서비스분야 미시행
  - 주민들은 직접적 서비스 수혜욕구가 강함.

- 인터뷰 결과 “1원 한 장이라도 내손으로 만져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건강검진 미시행지역(당진, 태안, 서천), 전기요금보조사업 미시행지역(당진, 서천)은 도입 필요.
- 지역 공공기관이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기금 활용
  - 면사무소, 소방서, 방범대 관련 지출(물품구입, 수리 등)
  - 국립공원 등의 환경정비

#### ■ 사업절차 관련

-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미흡
  -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해당 읍면동에 비치 후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공지에 그침.
  -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수립지침을 열람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지원사업 선정의 방향을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함.
- 자치단체 혹은 특정계층 주도로 사업 선정
  - 지역위원회 구성원 총14명 중, 9명이 자치단체 직원 또는 자치단체가 직·간접으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표 4 참조)
- 지역위원회 운영 형식화
  -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2009년~2011년)

#### ■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등)

- 육성사업의 관리감독 기준미비
  - 발전소별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이 통일성 없이 제각각 운영
  - 부정수급자 발생
  - 장학금 수령자 명단 비공개 (탈락자에게는 심사결과 및 사유 비공지)
- 사업비 집행과정의 회계투명성확보 장치 미비
  - 부당수령, 지원금 목적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어도 지원금 환수규정이 없음.
  -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통제장치도 없는 실정

- 환경모니터링에 대한 불신
  - 모니터링 실시업체를 발전소가 지정하여 결과 불신 (주민인터뷰)

## 2) 개선안 제안

### ■ 지출관련

- 사후정산 의무화
- 지원금의 부정수령, 목적외 사용이 적발될 시 지원금 환수 의무화
  - 반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지원금 지급시 삭감조치
  - 익년도 지원대상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조치 강구
  - 강제징수 방안 강구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부정수령, 목적외 사용 시, 보조금교부 일시정지, 강제징수를 가능하게 규정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도 상기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 강제징수 규정

### ■ 사업내용 관련

- 기금사용의 우선순위 제시
  - 사회적 비용(외부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기금운용 우선

<표 18> 화력발전소의 비용과 편익

	중앙정부/발전회사	시/군	읍/면/리 주민
직접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 유치에 대한 정책자금(인센티브)</li> <li>▪ 발전소건립에 따른 GRDP 증가</li> <li>▪ 지역자원시설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증가</li> <li>▪ 관련일자리 창출</li> <li>▪ 토지보상</li> <li>▪ 발주지 지원자금</li> </ul>
직접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매입비</li> <li>▪ 발전소 건설비</li> <li>▪ 발전소 운영비</li> <li>▪ 지자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li> </ul>	-	-
사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및 해양산업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오염에 따른 각종</li> </ul>

비용	지역 선택지 감소	<p>악영향 (주민건강, 농작물생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산업 피해</li> <li>▪ 가동 및 증설 등에 따른 피해 (소음,분진,운반차량 등)</li> <li>▪ 온배수 영향 (어업)</li> <li>▪ 경관 악영향</li> <li>▪ 대형화재사고 위험 (유독가스, 폭발 등)</li> <li>▪ 연료운반선 사고위험</li> </ul>
----	-----------	--

- 지나치게 포괄적인 세부내용을 알기쉽고 ‘주민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개선
-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 건강, 복리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 중심

현재 (ex. 공공·사회복지시설)	개선안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향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건강 증진 : 건강검진 무료실시, 의료비 지원, 주민건강 모니터링 등</li> <li>▪ 위험저감 사업 : 방재시설 설치, 방역도구 지급, 주변지역 환경모니터링 등</li> <li>▪ 소득증대 사업 : 친환경 농업 지원, 수산물 양식지원, 직판장 건립 등</li> </ul>

■ 사업절차 관련

-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홈페이지 및 관보·공보·지역신문·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 (행정절차법 상의 세부절차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게시)
  -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게시기간 연장
- 심의지역위원회 위원위촉시 직업군 다양화(이장단 멤버,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도청 관계자 등)

■ 기타

- 장학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통일된 지침 마련

## IV. 사례 비교

### 1) 국내사례(경북 울진군-원자력발전)

○ 한국수자력원자력(주) 지역지원사업의 시행 배경과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배경: 8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력수요급증, 원전필요성 증대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저조, 지역개발요구 및 민원급증  
지역화합경영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 근거 : 1989.6 발주지법 제정  
2005.7 발주지법 5차개정  
(수력원자력발전 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시행 근거마련)

<표 19> 원자력발전소 지원실적

(단위: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기금 지원	사업자 지원								
고리본부	172	209	161	152	162	162	160	160	163	163
한빛본부	127	119	119	114	119	119	122	122	121	121
월성본부	104	98	98	94	96	96	87	87	84	84
한울본부	121	117	476	116	378	166	267	177	196	176

출처) 원자력발전백서 2013

주) 기금지원사업 중 원자력문화재단 출연금 제외. 발주지사사업결산서 교부금액 기준.

<표 20> 2012년도 사업자지원사업 사업종류별 지원실적

(단위: 억원)

구분	교육장학	지역경제	환경개선	지역복지	문화진흥	기타
고리본부	55	50	2	28	21	7
한빛본부	17	40	21	10	25	8
월성본부	3	39	12	16	8	6
한울본부	16	64	10	47	24	15
합계	91	196	45	101	78	36
(‘12년 총금액 비중)	(16.7%)	(35.5%)	(8.3%)	(18.6%)	(14.3%)	(6.6%)

출처) 원자력발전백서 2013

○ 한울원자력본부(월성군) 사례

- 지원범위 주변지역: 북면, 죽변면, 울진읍

주변외지역: 평해읍, 후포면 등 7개읍면

<표 21> 한울원자력본부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기금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재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자 자기기금
규모('11)	177억원 (전전년도 발전량*0.25원)+a	177억원 (전전년도 발전량*0.25원)+a
	121억원 + 신한울 1,2호기 기본지원금 56억원 ※신한울 1,2호기 건설 특별지원금 :1,245억원(657억원 기교부)	
사업주체	지자체, 원자력문화재단, 한수원(전기요금 보조사업)	한수원
사용지역	기본지원사업비의 50%이내에서 주변외지역 사용가능	지역경제협력사업 등은 30%이내에서 주변외지역 사용가능

출처) 한국수자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 HP

<표 22> 한울원자력본부 지원사업 내역

기금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구분		'12년	구분	'12년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6	교육,장학지원사업	16
	공공시설사업	116	지역경제협력사업	63
	육영사업	30		
	사회복지사업	0	주변환경개선사업	10
	주민복지사업	0	지역복지사업	47
	기업유치지원사업	0		
	전기요금보조사업	20		
특별지원사업	20	지역문화진흥사업	24	
원자력 대국민 홍보사업	0	기타지원사업	15	
기타지원사업	사업운영비			0
	환경감시기구사업			5
합계		197	합계	175

출처) 한국수자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 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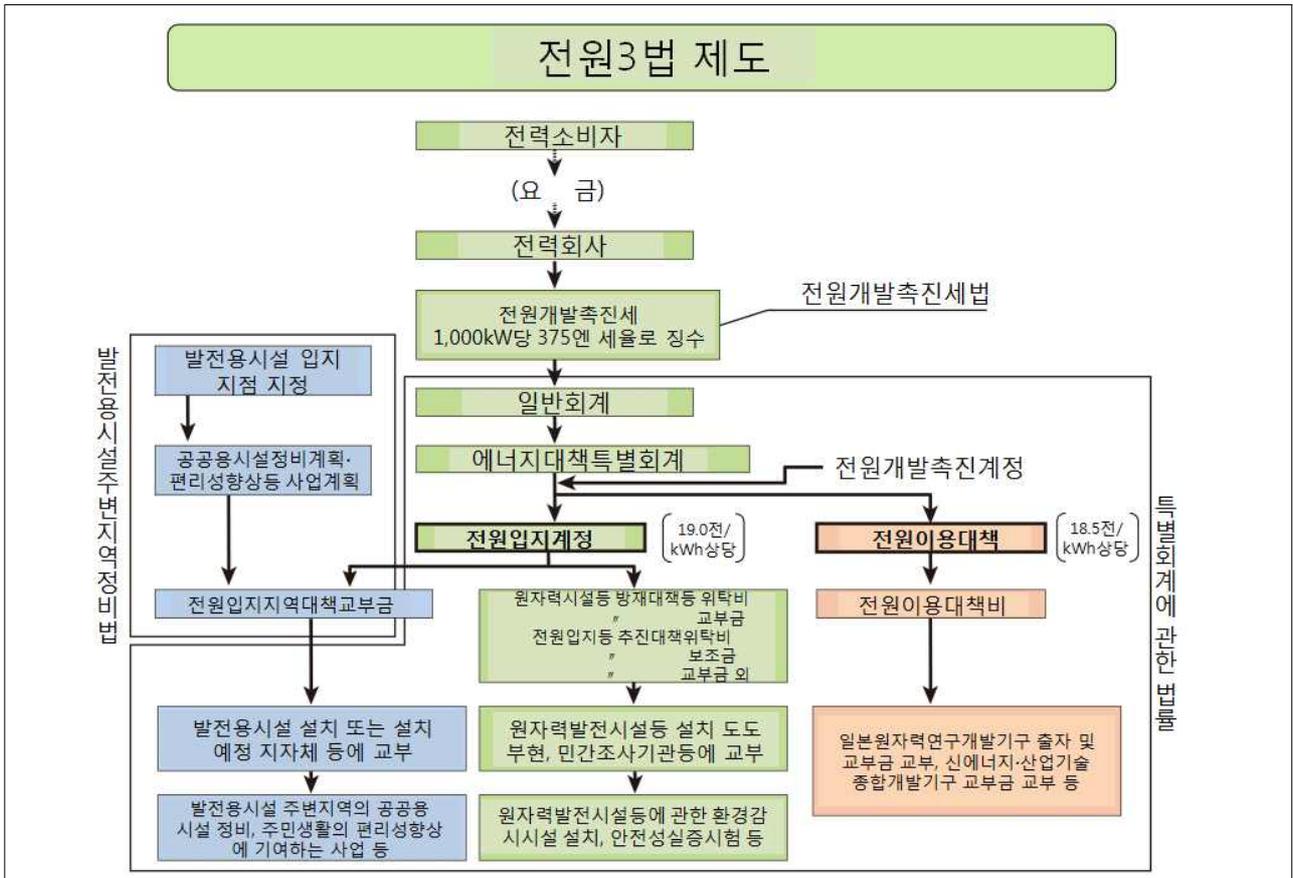
<표 23> 한울원자력본부 사업자지원사업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사업내용
교육,장학지원사업	원어민 영어강사채용, 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주니어 공학기술교실 시행, 울진중학교 급식소 증축, 친환경교실 조성사업, 저소득학생 급식비 지원, 울진도서관 및 주변지역 중학교 도서구입, 주변지역 초등학교 영어마을 연수
지역경제협력사업	울진해양생태관 건립, 어패류방류, 울진농기계임대은행 활성화사업,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 원전 전문인력양성교육
주변환경개선사업	어망어구 보관창고 건립지원, 전통시장내 갤러리 조성
지역복지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지원, 지역주민 의료서비스인프라 구축, 지역자활센터 신축사옥 건립지원, 사회복지기관 차량 지원
지역문화진흥사업	뮤직팜 페스티벌 개최, 공원조성, 지역체육행사개최
기타지원사업	지역사회 일체감 조성

## 2) 해외사례(일본 오키나와-화력발전)

○전원3법

- 1) 발전용시설 주변지역정비법
- 2) 전원개발촉진세법
- 3)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구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



- 교부금에 의해 전원입지시설에 따르는 전원지역의 생활·산업기반 정비, 지역산업 진흥 등을 도모. (1)에서의 발전용시설 중 화력전원은 오키나와현에 설치된 것에 한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해 공공용 시설정비계획, 편리성 향상 등 사업계획에 근거한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 상당부분)을 교부할 수 있음. 용도는 종래 공공용시설 정비 및 지역활성화사업, 지역산업진흥, 복지서비스제공사업, 인재육성 등 소프트사업에 사용 가능.



<표 25> 오키나와현의 화력발전소

명칭	운영개시	규모	사용연료	발전사업자
마키미나토 화력발전소	1~8호기) 1953.4 9호기) 1981.5 가스터빈1) 1977.5 가스터빈2) 1990.5	1~8호기) 폐지 12.5만kW 6만kW 10.3만kW	중유, 등유	오키나와전력
이시카와 화력발전소	1호기) 1974. 6 2호기) 1978. 6 가스터빈1) 1992.5	12.5만kW 12.5만kW 10.3만	중유, 등유	
구시카와 화력발전소	1호기) 1994. 3 2호기) 1995.3	15.6만kW 15.6만kW	석탄, 목질바이오매스	
킨 화력발전소	1호기) 2002. 2 2호기) 2003. 5	22만kW 22만kW	석탄	
요시노우라 화력발전소	1호기) 2012. 11 2호기) 2013. 5	25만kW 25만kW	LNG	
이시카와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1986. 11 2호기) 1987. 3	15.6만kW 15.6만kW	석탄	전원개발 (J-Power)

<표 26> 오키나와현의 전원대책교부금 활용사업 내역

년도	교부금사업자	조치	사업명칭	총사업비 (천엔)	교부금액 (천엔)
2008	기노완市	공공용시설정비	시도(市道) 개량사업	48,606	43,000
			시립운동장 보수사업	9,713	6,215
	공원 정비사업		2,730	2,360	
	니시하라町		정도(町道) 정비사업	2,942	2,941
			공공버스 구입	5,141	5,040
	키타나카구스쿠村		공민관 건설	61,425	47,364
			지역활성화	도서관 도서구입	10,500
2009	오키나와市	공공용시설정비	사회복지센터 건설	203,364	40,000
	나카구스쿠村		촌도(村道)방호책 설치	10,461	10,461
	킨町		특산품가공시설정비	224,301	211,286
2010	오키나와市		사회복지센터 건설	382,662	167,075
	나카구스쿠村		촌도(村道) 정비사업	28,072	28,071
2011	니시하라町		정도(町道) 정비사업	36,417	32,600
	나카구스쿠村		촌도(村道) 정비사업	28,072	28,071
2012	니시하라町		정도(町道) 정비사업	34,925	15,309
	나카구스쿠村		어민센터 신축공사	50,025	50,000

출처)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HP

- <표 26>의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의 활용을 보면 대부분이 공공용 시설정비 부분에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2년 준공된 요시노우라 화력발전소 입지로 교부금이 지급된 기노완市の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 활용사업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27> 기노완 市の 전원지역대책교부금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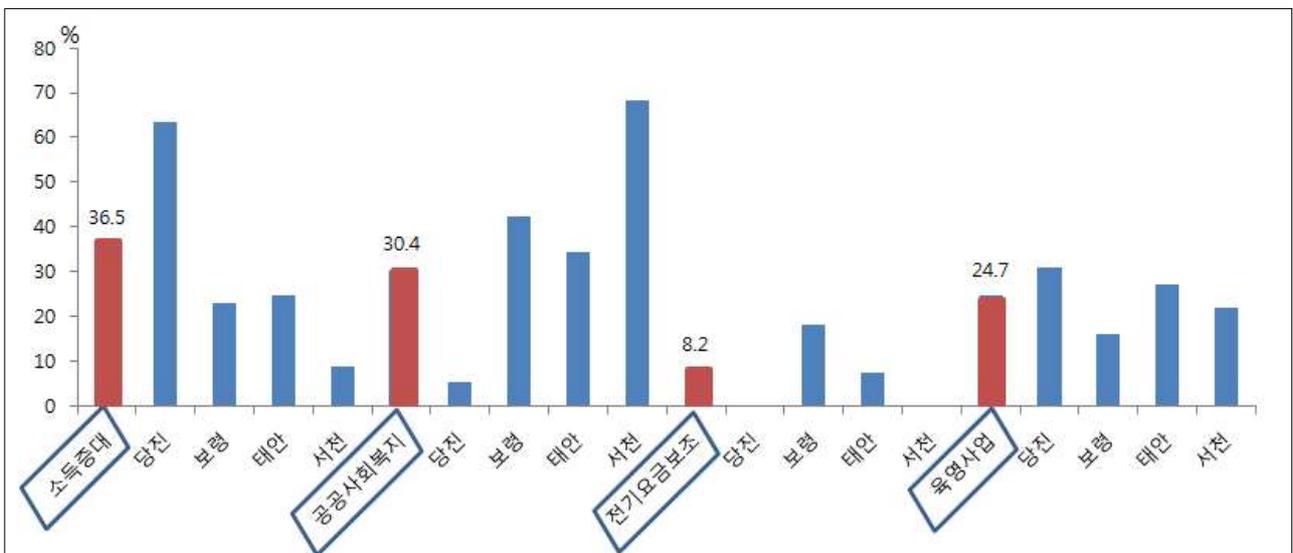
년도	사업분야	교부금 사업명칭	총사업비 (천엔)	교부금액 (천엔)
2006	공공용 시설정비	근로청소년홈시설정비사업	18,270	15,000
	공공용 시설정비	시립야구장 시설정비사업	32,855	32,000
	공공용 시설정비	시립운동장 시설정비사업	239,445	207,075
2007	공공용 시설정비	시립야구장 시설정비사업	32,424	24,000
2008	공공용 시설정비	시도(市道) 일부확폭사업	48,606	43,000
	공공용 시설정비	공원 정비사업	2,730	2,360
	공공용 시설정비	시립운동장시설 정비사업	9,713	6,215
2009	공공용 시설정비	시도(市道) 일부확폭사업	11,529	9,000
	공공용 시설정비	공원 정비사업	59,871	54,000
합 계			239,445	207,075

출처) 기노완市 HP

## V. 요약 및 결론

- 2011년~2013년까지 4개 지역(당진, 보령, 태안, 서천)에 투입된 지원금액은 약 824억원임.
- 전체 사업금액 중, 기본지원사업에서는 소득증대사업 36.5%, 공공·사회복지사업 30.4%, 육영사업 24.7%, 전기요금보조사업 8.2%, 주민복지지원·기업유치지원사업 0.2%의 비율로 지원.
- 특별지원사업에는 약 30.0%가 지원.
- 기타지원사업(표 2 참조)에 대한 지원은 없어 지자체장의 관심 제고 필요 (지자체장은 지원사업의 관리·연구·평가 및 홍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역별 기본지원사업 운용은 <그림 X>과 같음.
-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분야는 매우 미미함.
- 가장 활발히 운용되는 분야는 소득증대부분임.
- 다음으로 공공사회복지분야, 육영사업분야, 전기요금보조분야이며 주민복지, 기업유치지원분야는 운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기본지원사업의 분야별 및 지역별 운용



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 분야는 너무 적은 관계(0.2%)로 제외

○ 문제점은 크게 지출관련, 사업내용 관련, 사업절차 관련, 기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지출관련: 사업선정기준 모호, 특정분야 치중지원, 목적 불명한 지출
- 사업내용 관련: 포괄적인 세부내용, 주민의 요구와 실제집행사업의 괴리, 직접적 주민서비스 미흡, 지역공공기관을 위한 사업에 기금활용
- 사업절차 관련: 주민의견수렴절차 미흡, 특정계층 및 지자체 주도의 사업선정, 형식적인 지역위원회 운영
- 기타: 육성사업 관리감독 허술, 사업비 집행과정 회계불투명, 환경모니터링에 대한 불신

○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구 분	개선안	충남도 역할
사업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산자부 통보) 게시기간 연장</li> <li>○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공청회) 도입 및 구체적 게시방안 마련</li> <li>○ 신청사업 홈페이지 게시</li> <li>○ 지역위원 중 위촉인원의 직업군 다양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위원 멤버에 도관계자 참가권고</li> </ul>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사용의 우선순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기금운용 우선</li> </ul> </li> <li>○ 지원사업 대상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로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li> </ul> </li> <li>○ 사후정산 의무화</li> <li>○ 지원금 부정수령, 목적외 사용시 페널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 환수 및 강제징수</li> <li>- 형사처벌 규정</li> <li>- 익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li> <li>- 강제징수방안 강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li> <li>○ 사후정산 및 감사기관으로서 역할 명시(조례)</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사업 선정 세부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된 지침 마련</li> <li>- 장학금 수혜자 전체명단 공개 및 탈락자 개별 고지</li> </ul> </li> </ul>	